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2007년 6월 19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 소액 납부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구정운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11) 및 FAX(560-42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본인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대상자를 자체조사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납기 2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단으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보험료 납기 5일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 식의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 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